

인천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나726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민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명준, 권규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1. 27.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9. 15. 선고 2020가단11909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자동차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1. 21. 체결된
당사자거래이전계약을 7,23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자동차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1. 21. 체결된 당사자거래이전계약을 7,23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C의 누나이다.

나. C은 2015. 5. 18.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신용카드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C은 2019. 10. 22.경 D로부터 8,904,12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약관 규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C은 2019. 11.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당사자거래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명의이전등록절차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위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후인 2019. 12. 3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F에게 채무자를 피고, 채권가액을 3,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20. 2. 17. D로부터 C에 대한 위 카드론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D는 2020. 2. 20.경 C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자동차 외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D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등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상태였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는 7,23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는 그 당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였으면 족하고 그 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는 취소권 행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2019. 10. 22. D로부터 8,904,120원의 카드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2019. 11. 21.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20. 2. 17. D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에 관한 C 및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과 피고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과 함께 C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명의이전등록절차를 마친 뒤 약 1개월만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에 관한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범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새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 상당액인 7,23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소결론

결국,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7,23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7,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소병진, 판사 원용일, 판사 오기두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